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02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민병덕・이수진・김문수
임미애・오세희・한준호
김한규・이훈기・김태년
김영호・이재정・김현정
안도걸・박홍배・정진욱
이강일・권향엽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제철소는 고온・연속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고, 정전・전압변동 등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 및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산업 전반의 비용 부

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구조 변화는 철강업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철소는 전기로·고로 등 공정 특성상 부하변동 대응, 설비 효율화, 자가발전·부생가스 활용, 수요관리 참여 등 계통 안정과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국가 전력수급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51조(부담금)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제51조(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③ ~ ⑦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③ ~ ⑦ (현행과 같음)